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4. 14.(일) 11:00 < 4.15.(월) 조간 > 배포 2024. 4. 12.(금)

산단 내 12.6조 원 투자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위한 관리제도 개선

- 산업단지 임대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 입법예고(4.15~5.27)

산업단지 내 석유화학, 이차전지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은 공장건설 과정에서 야적장, 주차장 등의 용도로 필요한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. 이를 통해 현재 대기 중인 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대형 투자 프로젝트들*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.

* 울산 온산국가산단의 A사 프로젝트(9.3조원), 미포국가산단의 B사 프로젝트(1.8조원), 서산 오토밸리산단의 C사 프로젝트(1.5조원) 등 총 12.6조원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는 이러한 임대제도 개선을 위한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이하 산업집적법)」 개정안을 4월 15일(월)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 주요 내용으로 입주기업이 대규모 공장 신·증설시 해당 산업단지 내 타기업 소유의 산업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 현재 입주기업들이 산업용지만* 임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나, 법이 개정되면 대규모 공장 신·증설 공사과정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야적장,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. 아울러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(국토부)」과의 정합성 마련을 위해 민간 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대해서 산단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임대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.

* 현재 산업단지 내에서 입주기업은 산업용지와 공장등을 함께 임대하여야 함

산업부는 입법예고('24.4.15.~5.27.) 등을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제출하고,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지속적으로 찾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	책임자	과 장	김종우 (044-203-4430)
		담당자	사무관	안근영 (044-203-4409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**산업집적법 개정안 주요 내용**

구분	개정 내용	관련 조항
1	산업단지 내에서 공장등을 신·증설하려는 기업은 건설자재의 적치, 건설공사 관련 차량의 주차 등의 목적으로 해당 산업단지 내 타 기업이 소유한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함	제38조의3제2호
2	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려는 민간사업자는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국가첨단전략기술 기업 등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함 ※ 「산업입지법(국토부)」 제38조(개발한 토지·시설 등의 처분) 제9항과의 정합성 마련	제38조의3제3호